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. 12. 23 선고 2021가단8471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대한민국

피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운걸

변 론 종 결 2021. 11. 25.

판 결 선 고 2021. 12. 23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와 B 사이에 2019. 9. 30. 체결된 83,887,934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, 피고는 원고에게 83,887,93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의 피보전채권 발생

(1) B는 C에게 파주시 D 대 2,072㎡ 및 그 지상 2층 주택(이하 위 토지와 주택을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을 9억 2,500만 원에 매도하고 2019. 3. 5.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, 2019. 4. 21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.

(2) 한편, 원고는 2020. 4. 29.경 B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하였다며 추가로 97,547,351원을 더 납부하여야 한다고 고지하여 그 무렵 B가 이를 통지받았고, 원고 산하 파주세무서장은 2020. 7. 1.경 B에 대하여 2020. 7. 31.까지 97,547,351원의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할 것을 결정하고 그 무렵 이를 고지하였다.

(3) B는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았는데, 2021. 4. 8. 기준 B의 체납세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가산금(가산세)을 포함하여 106,326,560원 상당(이하 ‘이 사건 조세채권’이라 한다)이다.

세목	귀속	납세의무 성립일	납부기한	고지세액	체납액
양도소득세	2019	2019. 3. 31.	2020. 7. 31.	97,547,351	106,326,560
합 계				97,547,351	106,326,560

나. B의 증여 및 재산상태

(1) B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2019. 1. 14. 1억 원, 2019. 3. 5. 2억 원 상당을 B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수령하였고, 2019. 9. 30. 83,887,934원을 자녀인 피고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증여하였다.

(2) B는 위 증여 당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, 피고에게 예금을 증여하여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켰다.

구분	종류	내역	평가액(원)	비고
적극재산 (①)	예금	농협 (계좌번호 1 생략) 잔액	0	2019.9.30. 잔액
		농협 (계좌번호 2 생략) 잔액	3,158,556	
소극재산 (②)	조세채무 소계	조세채무	97,547,351	
사해행위 당시 순자산 (③ = ① - ②)			△94,388,795	
사해행위	2019. 9. 30. 피고 농협 계좌로 송금		83,887,934	이 사건 현금증여
채무초과 (③)			△94,388,795	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1 내지 10호증, 을 1, 2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 및 판단

가. 피보전채권

(1)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채무 이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총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자력 감소를 방지하고,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회수하여 채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,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액수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(대법원 2018. 6. 28. 선고 2016다1045 판결 등 참조).

(2)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인 위 증여일 전인 2019. 3. 31.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나, 피고가 B에 대하여 위 증여일 이후인 2020. 4. 29. 또는 2020. 7. 1. 이 사건 조세채권을 추가 납부할 것을 결정하고 그 무렵 이를 고지하였던바, 이 사건 조세채권의 구체적인 세액이 확정되지

않고 경우라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

나. 사해행위

위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인 B는 피고에게 예금을 증여하여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켰으므로, 위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채무자인 B와 수익자인 피고는 악의로 추정된다(한편, 원고는 2021. 2. 25. 위 증여가 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).

3.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

가. 피고의 선의 주장

피고는, B가 양도소득세 신고업무를 세무법인 E(F 세무사)을 통하여 하였는데, B와 피고 또는 그 가족들 누구도 세무업무를 잘 알지 못하여 세무사에 의뢰하고 세무사가 납부하라고 하는 세금을 그대로 납부하였으며, 원고가 추가로 양도소득세 납부결정을 할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 전에 위와 같이 증여를 하였던바, B와 피고는 위 증여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.

나. 판단

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, B가 양도소득세 신고업무를 세무법인 E(F 세무사)에게 맡긴 사실, 세무법인 E이 2019. 4. 21. B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, B나 피고가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.

따라서, B와 피고는 위 증여 당시 양도소득세가 추가 부과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,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균철